

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 공시송달 공고

지방세기본법 제64조(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)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내용: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환급금 군 세입 귀속
2. 공고기간: 2024. 5. 9. ~ 2024. 5. 23.(15일간)
3. 공고대상: <붙임>자료
4. 법적근거: 지방세기본법 제64조제1항
5. 송달내용: 해당 납세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아래 전화로 지방세환급금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, 기한 내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행사하실 수 없으며, 해당 지방세환급금은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.
6. 문의사항 : 연천군청 세무과 (☎ 031-839-2186)

2024년 5월 9일

연 천 군

